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 | | | |
|--------|------|-------|-----------------|
| 선 람 | 기관의장 | 제868호 | 2012. 1. 12.(목) |
| | | | |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79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80호 인천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일부 도로명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41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2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2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79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술단체별 정원

| 예술단체명 | 정 원 | 비 고 |
|---------|---|-----|
| 합 창 단 |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무장 1명 성악지도자 1명 단 원 60명 | |
|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무장 1명 성악지도자 1명 단 원 70명 | |
| 실 버 악 단 | 예술감독 1명 지휘자 1명 단무장 1명 단 원 25명 | |
| 풍 물 단 | 연출자 1명 훈련장 1명 단 원 60명 | |
| 무 용 단 | 안무자 1명 훈련장 1명 단 원 30명 | |

[별표 2]

예술단체별 단원의 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 예술단체명 | 직 위 | 지 급 액 | 비 고 |
|---------|-------|-----------|-----|
| 합 창 단 | 지휘자 | 1,500,000 | 월정액 |
| | 반주자 | 900,000 | " |
| | 단무장 | 400,000 | " |
| | 성악지도자 | 400,000 | " |
|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 1,000,000 | " |
| | 반주자 | 600,000 | " |
| | 단무장 | 400,000 | " |
| | 성악지도자 | 400,000 | " |
| 실 버 악 단 | 예술감독 | 1,000,000 | " |
| | 지휘자 | 800,000 | " |
| | 단무장 | 400,000 | " |
| 풍 물 단 | 연출자 | 1,000,000 | " |
| | 훈련장 | 600,000 | " |
| 무 용 단 | 안무자 | 1,000,000 | " |
| | 훈련장 | 600,000 | " |

인천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2년 1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80호

인천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 을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으로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 중 “인천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 을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차량관리시스템” 이란 관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를 통합한 시스템(전산관리)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가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관리시스템 형태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배정제한) 구청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정수배정·교체승인 협의) ① 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이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소형화물차에 한한다)
2.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3.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의 제목 “(운전주의 의무)” 를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운전원은” 을 “운전자는”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으로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

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차량의 차종 · 차형 ·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 차 종 | 차 형 | 배 정 대 상 | 최단운행기준연한 |
|------------------|---|--------------|--|
| 승 용 (전 용) | 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승용차량을 말한다) | · 구청장 |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과 최초등록일로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 운행 |
| | 중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승용차량을 말한다) | · 부구청장 | |
| 승 용 (의 전 용) | 대형승용차 | · 구의회 | |
| 승 용 (업 무 용) | 중형승용차 | · 구분청 | |
| | 소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형승용차량을 말한다)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 | 경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용차량을 말한다)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 | 짚형 또는 다목적형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 승 합 용 | 대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승합차량을 말한다)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
| | 중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승합차량을 말한다)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 | 소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형승합차량을 말한다)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과 최초등록일로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 운행 |
| | 경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합차량을 말한다)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 차 종 | 차 형 | 배 정 대 상 | 최단운행기준연한 |
|-------|--|--------------|--|
| 화 물 용 | 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
| |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톤 초과 10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 |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과 최초등록일로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 운행 |
| | 경형화물차 (배기량 8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 특 수 용 | 청 소 차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
| | 구 급 차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 | 분 뇨 차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 | 진 료 차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 | 이 동 수 리 차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 | 급 수 · 살 수 차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 | 트 릭 트 렉 타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 | 트 레 일 러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 | 렉 카 차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 | 기 타 특 수 차 | · 구분청, 구산하기관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일부 도로명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도로명의 변경 절차)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도로명변경 신청(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12. 1. 9. ~ 2012.01.25.(17일간)
2. 공고내용 : 별첨 조서 참조(에메랄드로외 4개)
3.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관계서류 : 해당 도로명 변경 조서
 - 열람방법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직접방문 열람가능
인천광역시서구 홈페이지열람(<http://www.seo.incheon.kr/>)
4. 의견 제출방법

【별첨】 조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 방문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전화 :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2)
 - 팩스 : 서구청 토지정보과(☎560-2787)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서구청 토지정보과 (404-701)
5. 도로명 확정 : 의견수렴 후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함으로써 도로명이 확정되며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도로명 변경 조서

| 일련 번호 | 도로 위개 | 관할 행정 구역 | 도 로 구 간 | | | | 기초 간격 (m) | 구분 | 현행 | | 부여예비도로명 | | | |
|----------|----------|----------------|------------------|------------------|--------|------|-----------------|--------|-------|--|-------------|---------------|---------|---|
| | | | 시작지점 | 끝지점 | 길이(km) | 폭(m) | | | 도로명 | 부여사유 | 도로명(1안) | 부여사유 | 도로명(2안) | 부여사유 |
| 1 | 로 | 청라동 | 연희동 678 | 연희동 767-1~776-1 | 1.7 | 20 | 20 | 도로명■변경 | 에메랄드로 | 경관특성화계획에 의거 에메랄드존에서 착안 | 청라국제도시에메랄드로 |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 청라에메랄드로 | 기부여 도로명은 불분명하고 특색이 없어 '청라'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
| 2 | 로 | 청라동 | 원향동 971-1~470-3 | 경서동 855-2~845-1 | 1.7 | 27 | 20 | 도로명■변경 | 루비로 | 경관특성화 계획에 의거 루비 존에서 착안 | 청라국제도시루비로 |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 청라루비로 | 기부여 도로명은 불분명하고 특색이 없어 '청라'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
| 3 | 로 | 청라동 | 연희동 678 | 연희동 762-1~7693-1 | 1.5 | 20 | 20 | 도로명■변경 | 라임로 | 경관특성화 계획에 의거 에머랄드존지역의 yellow-green 색상에서 착안 | 청라국제도시라임로 |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 청라라임로 | 기부여 도로명은 불분명하고 특색이 없어 '청라'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
| 4 | 로 | 청라동 | 경서동 982-1~981-10 | 경서동 837-2~842-2 | 3.8 | 17 | 20 | 도로명■변경 | 커널로 | 청라경관구조 계획에 의해 청라중심에 canal이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함 | 청라국제도시커널로 |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 청라커널로 | 기부여 도로명은 불분명하고 특색이 없어 '청라'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
| 5 | 로 | 청라동 | 경서동 857 | 경서동 837-1 | 1.2 | 20 | 20 | 도로명■변경 | 한울로 | 우주, 진실이 가득하라는 의미 | 청라국제도시한울로 |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 청라한울로 | 기부여 도로명은 불분명하고 특색이 없어 '청라'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

| 도로명[구간] 부여 의견서 | | | | |
|---|----|-----|------------------|--|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일반전화 | |
| | | | 휴대전화 | |
| 주 소 | | | | |
| 연번 및 도로구간 예비도로명(안) | 연번 | | 도로구간 예비도로명(안) | |
| 신청(의견) 구간/예비도로명 | | | | |
| 도로구간/ 예비도로명 부여의견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예비도로명/구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 | | | |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 |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41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이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으로 변경(조례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제호 및 명칭 등을 변경
- 구성원(관장, 운영요원, 사무원, 안내원)중 운영요원의 직명을 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제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함.

3. 주요 개정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명 등 명칭을 녹청자 박물관으로 변경
- 구성원 직명변경 (운영요원 → 연구원)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1.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 032-560-4341, 팩스 : 032-560-2748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고시·공고)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녹청자 박물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를 “녹청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하고,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녹청자 박물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료관의 장”을 “박물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운영요원”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9조 중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하고, “운영요원”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요원”을 “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료관”을 “박물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을 “녹청자 박물관”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료관” 을 “박물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장” 을 “녹청자 박물관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을 “녹청자 박물관” 으로 한다.

제4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및 제19조 중 “사료관” 을 각각 “박물관” 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운영요원” 을 “연구원” 으로 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운영요원” 을 “연구원” 으로 하고, 사무명란 중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을 “녹청자 박물관” 으로 하며, “사료관” 을 “박물관” 으로 하고,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을 “녹청자 박물관” 으로 한다.

별표 4 중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장인” 을 “녹청자 박물관장인” 으로 하고,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운영위원장인” 을 “녹청자 박물관 운영위원장인”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 | |
| 실·과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실·과별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기 간 ~ ○ 내 용 - 의견수렴 | - | - | - |
| 입 법 예 고 | | | |
| 협의개요 | 제 출 자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기 간 ~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 | - |